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범죄자 거주지제한명령 신설 〉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41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성범죄자 거주지제한명령 신설	3
[참고자료 1] 현행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보안처분	19
[참고자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2026. 4. 23. 시행예정)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	2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재섭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17.
3. 회 부 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주변 가까운 곳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할 기회가 생기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

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
텃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성범죄자 거주지제한명령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10년 이내)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이하 “거주허용주소지”라 함)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거를 명하고 미이행 시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거주허용주소지 거주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안 제58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8조의2(거주지제한명령 등) ①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거주지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이하 “거주허용주소지”라 한다)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하 “거주지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

현행	개정안
	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지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에 관련 전문가로부터 거주지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거주지제한기간 중에 거주허용주소지 외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해당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한까지 퇴거하지 아니하면 제58조의3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를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범죄로 거주지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거주허용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현행	개정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점검·확인한 결과 거주지제한기간 중에 거주허용주소지 외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항에 따른 퇴거명령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퇴거 조치 요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58조의3(퇴거명령 미이행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 강제로 퇴거하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강제퇴거 조치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적어 조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제58조의4(퇴거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퇴거명령 또는 제58조의3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개정안의 배경 및 현행 제도 등과의 비교

2020년 이후 조두순,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흉악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출소¹⁾가 이어지면서 그들이 거주할 예정인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국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공간적 제약을 두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가 2024. 1. 5.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26166호)」을 제출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2024. 1. 8.)되었으나 2024. 5.29.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²⁾는 법원은 전자

1) 2020년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범죄자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힌 이후 피해자는 주거지를 떠나 이사하였고, 2022년 10월 31일 출소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불안이 높아 해당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CCTV를 확대하고 안전용품 등을 나눠주며 퇴거 명도소송도 진행 중임. (정혜원·임예슬,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지역사회 불안과 경기도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3., 1쪽)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주거지역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³⁾는 법원 및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장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장소 제한 대상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로 매우 제한적이며,

이러한 제한제도는 법원이 추가적인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해당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당사자가 거주하는 시, 군, 구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역이나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장소로부터 가까운 몇 미터 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⁴⁾.

-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3. 가석방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4. 임시퇴원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형 집행종료 등으로 사회로 복귀하면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강제로 퇴거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을 막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2026년 1월말 현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정안 3건⁵⁾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409호)」 1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제정안 3건은 2024년 1월에 제출되었던 정부안처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⁶⁾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4) 윤정숙 등,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18~20쪽; 배소연,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16~18쪽 참조.

5)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39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175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010호)

6)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거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는 거주제한 명령 대상, 거주제한 기준 시설 및 제한 거리, 제한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음.

-
-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해외입법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임. 미국의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난 제시카 런스포드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입법된 플로리다의 주(州)법으로, ① 성범죄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②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형량을 상향하며, ③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전자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학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2,000~2,500피트(600~7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⁷⁾임.

이 법의 영향을 받아 이후 미국의 다른 여러 주에서도 교육시설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였고, 일부 주는 성폭력범죄자가 정부가 승인한 장소에서 거주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미국 연방차원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은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음⁸⁾.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특정 장소를 거주지로 지정하는 해외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7) 김대근, 「‘한국형 제시카법’도입의 문제와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3. 3.

8) 배소연,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1쪽. 참고로 미국 각 주가 규정하고 있는 거주지 제한 법률상 거주가 금지되는 장소의 목록 및 구체적인 제한 거리는 같은 책 22~27쪽을 참고할 것.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거주지 지정 등 관련 해외 입법례>

구 분	주요내용
미국(연방)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조건 집행유예자 또는 가석방자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거주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 [연방형법 제3563조(b)(13), 제3584조(d)(3)]
프랑스	- 보호관찰 조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일정한 장소에 거소를 정할 것(형법 제132-45조) - 형 집행 종료 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에게 거소의 변경 또는 15일을 초과하는 모든 여행을 사전에 통지하고 귀소를 보고할 것(형법 제132-44조)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중죄로 15년 이상 구금형이 선고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 지정 의무(형사소송법 제720-30조)
영국	- 가석방자는 보호관찰관이 승인한 주거지에 상주하며, 그와 다른 주소에 며칠 동안 머무를 때에는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2015 형사사법법 가석방조건 시행령 3-(2)(e)]
독일	- 보호관찰 조건 집행유예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적정한 공공 수용시설 또는 적정한 기관에 거주할 것(형법 제56조c:3-2)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주거지, 체류지 또는 일정한 범위를 감독청의 허락 없이 떠나지 말 것(형법 제68조b)
오스트리아	-가석방자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특정한 장소·가정·집에 거주하게 하거나, 특정한 주거 또는 장소에서 피할 것을 선고할 수 있음 (형법 제51조-2)

자료 : 법무부(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010호)”, 2025.4, 16쪽에서 재인용.)

라.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개정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를 제한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으로써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낮출 수 있음. 특히 아동·청소년이 자주 방문하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이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줄이고 자기보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개정안과 같이 ‘거리 기준’을 두어 거주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은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좁은 땅에 인구밀도가 높고 대부분 지역이 도시화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거점(기준 장소) 지정 후 거리 제한방식을 통해 거주제한을 할 경우 대도시에서는 성폭력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없게 되기 때문임.

- 한 언론보도⁹⁾에 따르면, 서울의 미성년자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직선반경 500m 이내 면적을 모두 합하면 서울시 면적보다 무려 9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오고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2023. 2.12. 기준)의 주거지를 확인해 본 결과 1명을 제외

9) 연합뉴스 기사(2023.2.12.), “[한국형 चे시카법] 서울 사는 성범죄자 99.8% 이사가야 할 수도”,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0041000004>)

한 422명이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4년 1월에 정부가 제출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의안번호 제2126166호)」 마련 과정에서 법무부는 당초 고위험 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미터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¹⁰⁾을 검토하였으나,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그 외 지역으로 내몰게 되어 치안영역에서의 지역격차 문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제시카법 도입 후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하여 노숙자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정하였다는 점¹¹⁾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성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함. 「대한민국헌법」 제14조¹²⁾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이를 이전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이전당하지 아니할 자유¹³⁾를 의미하는데, 개정안은 거주금지장소를 설

10) [보도자료]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2023. 1.26

11) [보도자료]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2023.10.24

12) 「대한민국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정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되거나 조치를 하는 등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 대상자가 제한되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므로 침해되는 이익은 작은 반면, 범죄위험 감소 이익은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돌아가므로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지지의견과 성범죄자들이 대도시에는 사실상 거주할 지역이 없어지므로 거주·이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범죄예방효과가 불확실하여 입법으로 달성할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모두 존재함¹⁴⁾.

한편, 대도시에 거주하기 어려워지고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거주에 대한 선택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도 일부 제약될 수 있다는 의견¹⁵⁾도 있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외 다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이미 성범죄자들에게 다양한 보안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중복

13) 성낙인, 『헌법학(제23판)』, 법문사, 2023. 1426쪽.

14) 윤정숙 등, 앞의 책, 99~109쪽; 배소연, 앞의 책, 53~56쪽; 안성훈, “한국형 제식카법의 주요 쟁점과 헌법 적합성”, 법무보호연구 제9권제1호, 2023.6.30., 146~149쪽 등 참조.

15) 배소연, 앞의 책, 56~58쪽

적이고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즉, 현재도 성범죄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여러 보안처분이 부과([참고자료 1] 참조)되고 있는바, 거주지제한명령을 별도로 둘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정책이 실제 범죄억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노숙자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선행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특정 지역 내 성범죄자 거주와 성범죄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고 거주지 제한 정책 전후 성인 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 대상 성범죄의 변화나 재범발생률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¹⁶⁾.

이에 반해 거주지 제한 정책으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이 부족해 이들 상당수가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를 군집하게 하여 슬럼화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성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게 되고 고립됨에 따라 그들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하고 재범 위험성을 오히려 높이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⁷⁾.

16) 윤정숙 등, 앞의 책, 40~49쪽

다섯째, 개정안은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지제한명령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거주지제한명령 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제정안들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일정 횟수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 중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 등으로 대상이 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¹⁸⁾하고 있음.

여섯째,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전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장소에는 일괄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약 57만 개소¹⁹⁾에 달하고 2025년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등을 추가하는 등 계속 해당 기관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거주제한구역이 지나치게 넓지는 않은지, 성범죄자가 주거지를 정할 때 거주제한구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17) 윤정숙 등, 앞의 책, 40~49쪽

18) [참고자료1]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19)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3.8.),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57만개소, 390만명) 전수 점검 실시” 참조.

종합하면,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근처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주지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거주 제한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성범죄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직접적 제한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안처분 외에 거주지제한명령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 인지 및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지, 거주제한명령 대상자나 제한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도입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²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들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아동·청소년 보호 가정의 불안감과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보호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거

20) 2026년 1월 기준 제정법안 3건(「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39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175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010호) 및 개정안 1건(「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409호)」) 등 총 4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

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거주지 제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성, 현실적 실현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 거리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 일률적인 거주제한명령 선고에 대한 우려 등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 1] 현행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보안처분

구분	수감·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근거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대상 성범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추행의죄 ²¹⁾			
	형법상 강도강간(미수범 포함)		형법상 강도강간, 해상강도강간 (미수범 포함)	
	성폭력처벌법제3조(특수강도강간)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미수범 ²²⁾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미수범
	형법상 기타 성 관련 범죄 ²³⁾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²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까지의 죄	
	위의 성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성범죄 ²⁵⁾			
절차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병과	법원이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기간	500시간의 범위	신상정보공개·고지: 30년~10년 (원인범죄의 선고형에 따름) 취업제한: 10년이내	15년의 범위	원인범죄 법정형의 상한과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에 따라 1년~30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범죄시 부착기간 하한 2배 가중)
보호 관찰 병과	형 집행유예시 수감명령과 보호 관찰 병과 가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보호관찰 병과 가능	치료기간 동안 의무적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 보호 관찰

구분	수강·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 준수 사항 ²⁶⁾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 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 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 호관찰관에게 신 고할 것 3. 「보호관찰 등 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9조 ²⁷⁾ 의 특별준수사항		1. 「보호관찰 등 에 관한 법률」 제3 2조제2항제1호~제3 호의 준수사항 2. 보호관찰관의 지 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를 응할 것 3. 보호관찰관의 지 시에 따라 정기적으 로 호르몬 수치 검 사를 받을 것 4. 보호관찰관의 지 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1. 야간, 아동·청 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 역 등 특정지역· 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 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 금지 6. 그 밖에 부착명 령을 선고받는 사 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담 보호 관찰	-	-	집행전담 보호관찰 관 지정	19세 미만 대상 성 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 관찰 실시

자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앞의 글, 11쪽.

- 21)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만 제외하고, 나머지 보안처분은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및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외
- 22) 성충동약물치료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모두 제3조(특수강도강간)부터 제9조(강간등 살인·치사)까지의 미수범만 포함
- 23)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및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범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
-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 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부터 제15조까지(강간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알선영업행위) 및 제15조의2의(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26) 대부분의 성폭력범죄자는 보호관찰을 받게되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제32조제3항 각호의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 제39조(준용) ①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제19조(특별준수사항) 및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참고자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2026. 4. 23. 시행예정)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삭제 <2025. 4. 22.>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